

검 토 의 건 서

- 일 시 : 2021. 6.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3호,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스마트도시정책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먼저 김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93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과 구체적인 목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기
능에 가명처리 적합성 검토 등을 추가하여 시장이
가명처리 내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스마트도시정책관 이 원 목